

## 하나 해외이주 유학 클럽 서비스 약관

### 제 1 조 (목적)

하나 해외이주.유학클럽 서비스약관(이하 '약관' 이라 함)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, 거주 또는 유학하게 될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인 하나 해외이주 유학클럽(Hana Overseas Club)서비스(이하 '서비스'라 함)의 제공자인 하나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함)과 이용자인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이다.

### 제 2 조 (서비스의 이용대상)

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은행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실명의 개인중 일정금액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기본계좌에 급여, 상여금등을 자동이체 하거나, 해외에서 기본계좌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자로 한다.

### 제 3 조 (서비스의 종류)

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

- 1.자동이체 서비스: 고객의 기본계좌에서 은행 및 타행의 고객계좌 또는 타인계좌로의 자금이체, 지로 대금 납부
- 2.예약이체 서비스: 제 1 호의 업무에 대해 예약을 받아서 처리
- 3.수시지급 서비스: FAX 및 E-mail 등으로 고객의 수시 또는 비정기적인 지급지시를 받아서 지급처리. 단, E-mail의 경우에는 본인명의 해외은행 계좌로의 송금, 당행내 본인명의 계좌간 이체에 한한다.
- 4.자금운용 및 보관 서비스 : 여유자금을 고수익 상품으로 운용하거나 대여금고를 이용토록 제공

### 제 4 조 (서비스의 이용시간)

- ① 자동이체, 예약이체, 수시지급 등 업무의 서비스시간은 고객의 거주지에 불구하고 은행의 국내영업시간으로 한다.
- ② FAX 및 E-mail 등에 의한 수시지급이 영업시간 중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당일중 처리하고, 영업시간 이외에 접수되는 경우는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의 영업일중에 처리하기로 한다.

### 제 5 조 (기본계좌)

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요구불예금을 기본계좌로 가입하여야 한다

#### 제 6 조 (수시지급서비스 처리방법)

- ① 수시지급은 FAX, E-mail 등에 의한 고객의 지시에 따라 기본계좌에서 인출하여 고객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한다.
- ② 전항에 의한 수시지급은 FAX 로 송부받은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상의 인감 또는 서명,비밀번호 및 암호가 일치하면 처리하기로 하고, E-mail 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E-mail 주소, 비밀번호 및 암호가 일치하면 처리하기로 한다.
- ③ 타행환의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일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의 기본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익영업일에 재처리한다.

#### 제 7 조 (수시지급서비스 처리한도)

수시지급서비스 처리한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
#### 제 8 조 (서비스의 정정, 취소)

서비스를 받은 후 거래내용의 정정, 취소는 은행에서 실행하기 전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미 실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## 제 9 조 (서비스의 제한)

-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.
  1. 기본계좌의 잔액이 서비스 신청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미결제 타점권이 있을 때
  2.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입 .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이 발급되었을 때
  3. 입. 출금계좌가 해약 되었을 때
  4.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
  5. 비밀번호, 암호, E-mail 주소, 서명 또는 인감이 상이한 때
- ②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의한 서비스 제한은 해당 영업일간에 한한다.

#### 제 10 조 (이용수수료등)

- ① 이용수수료, 타행환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는 기본계좌에서 자동인출한다.
  - ② 이용수수료의 요율 및 계산 방법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은행은 거래실적,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용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

### 제 11 조 (거래내역서 송부)

은행은 고객이 거래내역서 송부를 Fax 로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서상의 인감 또는 서명, 비밀번호 및 암호, E-mail 로 요청한 경우에는 E-mail 주소, 비밀번호 및 암호가 일치하면 거래내역서를 요청방식에 따라 송부하며 우편발송시 우편비용등 부대비용은 기본계좌에서 자동 인출할 수 있다. 이때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역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

### 제 12 조 (변경, 사고사항의 신고)

- ①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, 암호, 인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현지 영사의 인증등 본인의 진정한 의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의 송부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주소변경 등 경미한 제신고 사항은 은행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송부하거나 전화로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 13 조 (서비스 이용의 정지)

은행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
  2.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경우
  3.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은행은 제 1 항 각호의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.

### 제 14 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 13 조 제 1 항의 사유로 이용이 정지되어 3 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### 제 15 조 (면책)

- ① 고객이 FAX 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서명감)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.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, 동 청구서에 적힌 비밀번호 및 암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위조 또는 변조등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② 고객이 E-mail 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의 경우 E-mail 주소,비밀번호와 암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③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객의 비밀번호 또는 암호 등이 누설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## 제 16 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 20조를 따른다

#### 제 17조 (관할법원)

이 약정에 터잡은 서비스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때에는 은행의 본지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#### 제18조(준용규정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 법령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별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.

---